

심 사 보 고 서

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2018. 10. 24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02일
- 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04일
- 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11일
 -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현순 여성정책관)

가. 제안사유

-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출연목적
 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며('17. 2. 17),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○ 출연 예정금액: 1,227,198천원(도비100%)

- 출 연 근 거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- 재단운영비: 1,227,198천원 (인건비 및 경상비, 사업비)

○ 출연계획 (단년 · 반복사업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17년 (A)	2018년 (B)	2019년 (C)	증감 (D=C-B)
도비(100%)	1,135,000	1,117,206	1,227,198	109,992

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가.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북여성재단의 재산 및 운영경비에 대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제출되었음.

나.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, 충청북도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
-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·가족 역량강화 사업,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성평등 교육 연구 거점기관으로서의 존립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출연계획안이 출연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자체수익사업 운용을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 계획과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- 아울러,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출연금액 대한 세부사업별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참고자료 **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**

□ 충북여성재단 연도별 예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17				2018			
	계	출연금	수탁사업	용역수탁사업 등	계	출연금	수탁사업	용역수탁사업 등
합계	1,659	1,135	484	40	1,938	1,117	601	220
국비	264		264		328		328	
도비	1,355	1,135	220		1,390	1,117	273	
기타	40			40	220			220

□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1,228		
운영재원	1,228		
인건비	542	- 사무처 직원 9명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)	
경비	218	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집기구입 등	
사업비	468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(안)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0. 2.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하였으며(17. 2. 17),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□ 출연 예정금액 : 1,227,198천원(도비100%)
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- 산출근거
 - 재단 운영비 : 1,227,198천원(인건비 및 경상비, 사업비)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7년 (A)	2018년 (B)	2019년 (C)	증감 (D=C-B)
도비(100%)	1,135,000	1,117,206	1,227,198	109,992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여성정책관 여성정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박현순	강창식	김윤진	220-3912

기관명	충북여성재단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 사 장 : 이시종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(현원/정원) 12/13 (주요사업)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·가족 역량강화 교육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, 성주류화 과제 컨설팅 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자·출연 예정금액 : 1,227,198천원(도비 100%)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			
	구 분	사 업 간	2018년 예산액	2019년 예산액*	재원별			
	계		1,188,006	1,307,198	계	도비	시·군 비	기타
	도비출연금	1~12월	1,117,206	1,227,198	1,227,198	1,227,198		80,000
기타수익금	1~12월	70,800	80,000	80,000			80,000	
출자·출연 필요성	○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※ 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총당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권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 2월 설립한 충북여성재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○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한 여성·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·연구를 비롯한 충북 여성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. ○ 특히, 2019년도에는 도내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와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. 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조직표, 인력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
 - 결산서 기간 1년 미만 경영 평가 미 실시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 - 재정사업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.
- '17년 설립, '18년 출범 초기 재단 조직의 조기 정착 시기이며, '19년은 충북여성재단의 안정화와 여성의 권익증진, 교육·연구,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을 통해 도약할 시기임.
- 특히, 도내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와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충북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함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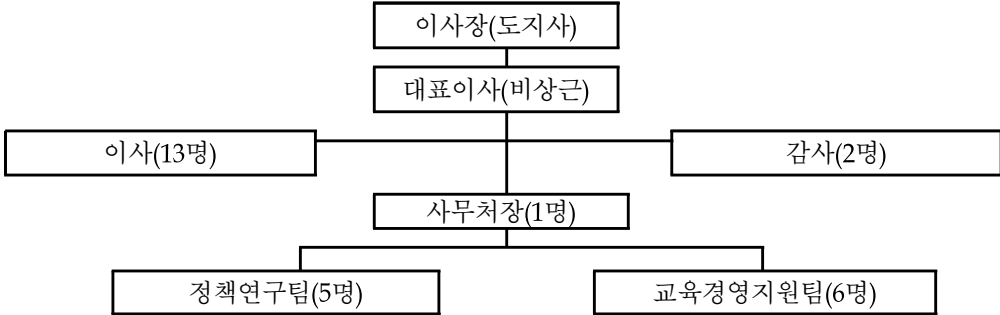
	2018년 예산액(최종) (C)	2019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
합 계	1,188,006	1,307,198	1,307,198		119,192
도비출연금	1,117,206	1,227,198	1,227,198		109,992
기타수익금	70,800	80,000	80,000		9,2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2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북여성재단

설립근거	- 민법 제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			전화번호 : 043-285-2421			
주요연혁	- '17. 2. 17 : 충북여성재단 설립		기관형태	출연기관(재단법인)			
인원현황	계		정규직	비정규직			
	20		12	8			
임원구성	이사장	이○○	충청북도지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권○○	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이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재임기간			
	선임직이사	백○○	한국교원대학교 교수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소○○	충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손○○	충북여성미술작가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연○○	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오○○	충북여성행복지원단 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오○○	대한미용사회충북지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유○○	동양일보 상임이사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한국걸스카웃충북연맹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정○○	충북여성연대 공동대표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최○○	진천여성단체협의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한○○	충북간호사협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당연직감사	박○○	충청북도 여성정책관	재임기간			
선임직감사	신○○	회계사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	
조직	 <pre> graph TD A[이사장(도지사)] --> B[대표이사(비상근)] B --> C[이사(13명)] B --> D[감사(2명)] B --> E[사무처장(1명)] E --> F[정책연구팀(5명)] E --> G[교육경영지원팀(6명)] </pre>						
주요기능	- 여성정책연구·개발,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사업,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100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,117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6	2017	2018	재무현황 (백만원)	자산(A=B+C)	100
	예산액	-	1,659	1,188		부채(B)	-
	지자체 지원액	-	1,135	1,117	'17.12.31기준	자본(C)	100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7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-			-		-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여성재단 출연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여성정책관		출연	1,227,198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, 민관 소통 역할 수행
-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(허브)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여성재단 운영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
- 출연금액 : 1,228백만원(도비 100%)
- 주요내용 : 충북여성재단 교육 및 연구사업, 성평등·일자리 사업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1,228		
운영재원	1,228		
인건비	542	- 사무처 직원 9명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)	
경비	218	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집기구입 등	
사업비	468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	

□ 기대효과

-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충북여성재단은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생 재단으로서,
 - 도비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,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과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임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중복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